

건설산업동향

# 일반·전문 건설업체 합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이의섭

2006. 12

- 문제의 제기 ..... 4
- 기업 합병 관련 조세 제도 ..... 6
- 합병 절차 간소화 ..... 17
- 요약 및 결론 ..... 21



## 요 약

### ▶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합병을 활성화하여 겸업 제한 폐지의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함.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 제한 폐지의 효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별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합병을 원할 경우 합병에 대한 장애 요인이 없어야 함.
- 그러나, 현재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합병에 관한 장애 요인에 대한 논의는 없고, 겸업제한을 폐지하는 경우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상호 실적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 있음.

### ▶ 기업 합병에 관한 과세 특례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나라도 1998년 「세법」을 개정하여 「법인세법」에 「기업의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비과세 합병을 일부 인정하고 있음(「법인세법」 제44조~50조).
- 그러나, 우리나라의 합병에 관한 과세 특례 제도는 적용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복잡하게 제도화되어 기업 합병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되는 측면이 있음.
- 구체적으로는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에 대한 요건 완화, 피합병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피합병 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 이연, 취득세 비과세에 대한 세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 ▶ 기업 합병기간을 단축하고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상법」상 최단 8개월 정도 소요되는 기업 합병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음. 즉, 구체적으로는 ① 채권자 이익제출 시간 단축, ② 합병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 단축, ③ 합병계약서 공시기간 단축 및 ④ 주식매수청구권 절차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음.
- 예를 들어, 현행 「상법」상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는 주주총회를 전후하여 2단계로 규정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이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 것임.
- 합병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함.

## ■ 문제의 제기

- 현재 일반건설업 면허와 전문건설업 면허의 중복 취득을 금지하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효율적인 시공 체제를 갖추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
- 즉, 전문건설업체가 특정한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하여 종합적인 관리 능력을 갖추어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면 전문건설업의 영업을 포기하여야 하고, 일반건설업체가 시장 환경이 변하여 전문 공사를 수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일반건설업 영업을 포기하여야 함.
- 따라서, 현재 많은 일반건설업체가 편법으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많은 전문건설업체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는 2006년 7월 25일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 제한을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2006년 11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 제한 폐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별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합병을 원할 경우 합병에 대한 장애 요인이 없어야 함.
- 그러나, 현재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합병에 관한 장애 요인에 대한 논의는 없고, 겸업제한을 폐지하는 경우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상호 실적을 어떻게 인정할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 있음.
- 심지어 일부에서는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새로이 등록하거나,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을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 종전에 등록한 업종에 대한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에서도 부칙으로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겸업 제한 폐지시 상호 실적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 시공능력을 산정할 때 제한된 기간과 범위 내에서 실적을 상호 인정하여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를 겸업할 경우에는 기존 일반건설업 실적의 일부를 전문건설업 실적으로,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을 겸업할 경우에는 기존 전문건설업 실적의 일부를 일반건설업 실적으로 의제하겠다는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시공실적의 상호 의제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 제한 폐지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정책이고 건설산업의 구조조정과도 역행하는 정책임.
- 예를 들어, 겸업을 하는 경우 상호 실적을 의제하면 일반건설업자는 새로이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것이고, 전문건설업자는 새로이 일반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것임.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호 실적을 의제하는 대신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합병을 용이하게 하여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합병을 유도하는 것이 겸업 제한 폐지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합병과 관련된 제도를 점검하고 이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임.
- 한편, 향후 중장기적으로 국내 건설시장은 고도의 경제 성장기처럼 높은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심지어는 건설업 시장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음.
- 건설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건설산업의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시점에 이를 수 있음.

-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경쟁이 치열한 산업의 경우 기업 합병을 구조 조정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건설산업도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업 합병과 관련된 장애 요인을 찾아내 이를 제거하여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겸업제한 폐지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향후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의 장애 요인이 없도록 기업 합병과 관련된 제도를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 기업 합병 관련 조세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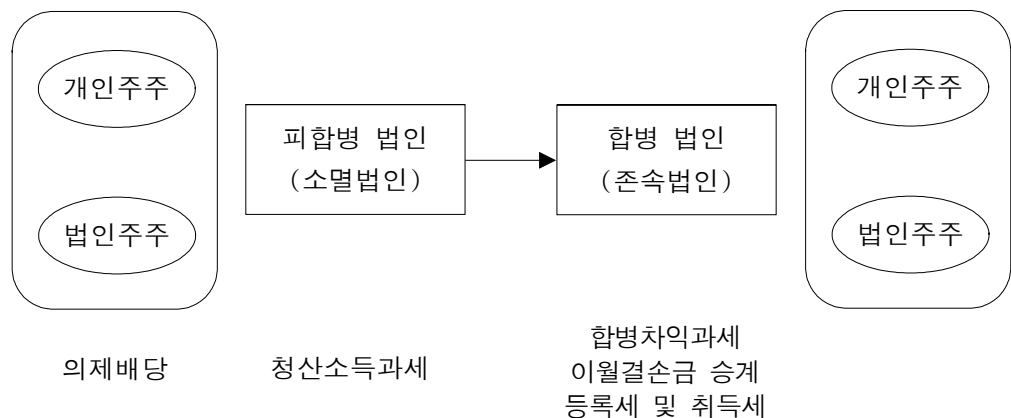
- 기업 합병이란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조직의 재편성이고, 합병 법인의 경제적 기능인 경영활동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합병 법인에게 이전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임.
- 따라서, 합병으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자산의 거래가 발생하였다도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로 과세를 이연하고 합병시에는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 즉, 기업 합병은 자산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아닌 이상 과세를 이연하여 합병시에는 비과세하여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장애 요인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우리나라도 1998년 「세법」을 개정하여 「법인세법」에 「기업의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비과세 합병을 일부 인정하고 있음(「법인세법」 제44조~50조).
- 그러나, 우리나라의 합병에 관한 조세 특례 제도는 적용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복잡하게 제도화되어 기업 합병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이하에서는 기업 합병(merger)과 관련된 현행 조세 제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기업 합병과 관련된 과세 문제

- 기업 합병시 발생하는 과세 문제는 합병 법인(존속법인)과 피합병 법인(소멸법인)과 관련된 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그림 1> 참조).
- 첫째, 합병 법인과 관련된 과세문제는 합병 법인에 대한 합병 차익 과세 문제, 이월결손금 승계문제 및 취득세와 등록세 문제가 있음.
- 둘째, 피합병 법인과 관련해서는 피합병 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와 비합병 법인에 대한 청산소득 과세 문제가 있음.

<그림 1> 기업 합병시 발생하는 과세문제



### 기업 합병에 관한 과세 특례

#### ■ 과세 특례 개관

- 법인세법의 「기업의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중 기업 합병에 관한 과세 특례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음.

- 일정한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기업 합병에 관해서 합병 법인의 합병 평가차익의 손금산입인정과 이월결손금승계, 피합병 법인의 청산소득 및 피합병 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세부적인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적용 요건이 조금씩 상이함.
- 합병 회사의 합병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기본요건(<표 1> 참조)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월결손금 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건 외에도 2가지 추가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합병 법인의 청산소득과 피합병 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문제인 경우에는 기본요건 중 첫 번째 요건과 두 번째 요건만 적용됨.

**<표 1> 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합병의 기본요건**

1. 합병 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합병 법인으로부터 합병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합병 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95% 이상일 것
3. 합병 법인이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 과세 특례 기본요건 평가

- 첫 번째 요건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간의 합병에 한해서 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요건으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두 번째 요건은 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합병시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합병 대가를 받는 경우에 주식의 형태로 받는 금액이 95%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는 기업 합병으로 인하여 기업의 내부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 번째 요건인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합병 법인이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합병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

### ■ 합병 차익의 기본 개념

- 합병 차익이란 합병 법인이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피합병 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합병 대가를 초과할 경우 이 초과분을 의미함.

$\text{합병 차익} = \text{합병 법인이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 - \text{피합병 법인에게 지급한 합병 대가 (합병 신주 + 합병 교부금)}$
--

- 합병 차익은 합병 평가차익, 합병 감자차익, 자본잉여금승계액 및 이익잉여금승계액으로 구성됨(<표 2> 참조).
  - 합병 평가차익은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 중 피합병 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임.
  - 피합병 법인이 결손법인으로 주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 피합병 법인의 순자산을 장부가액대로 승계함에 있어서 피합병 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게 합병 주식을 교부할 때 승계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피합병 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주식 간의 차이는 합병 감자차익으로서 합병 차익이 됨.
  - 피합병 법인이 자본잉여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장부가액대로 합병 법인이 승계하고 그 자본잉여금에 대하여 합병 주식이나 기타 합병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합병 차익이 발생함.
  - 피합병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장부가액대로 합병 법인이 승계하고 그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합병 주식이나 기타 합병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합병 차익이 발생함.

<표 2> 합병시 승계자산과 합병 차익의 구성

승계한 자산의 총액	승계한 부채의 총액	
	순 자 산 가 액	합병 교부주식
		합병 교부금
		①합병 평가차익
		②합병 감자차익
합병 차익	③자본잉여금승계액	
		④이익잉여금승계액

■ **현행 제도 및 문제점**

- 합병 차익의 구성요소 중 합병 감자차익, 자본잉여금승계액 및 이익잉여금승계액은 피합병 법인의 유보금이나 출자자의 지분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미 과세 대상이 된 것으로 간주하여 익금불산입하여(수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비과세하고 있으나, 합병 평가차익은 익금산입하여(수익으로 인정하여) 과세하고 있음.
- 다만, 위에서 언급한 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증(評價增)으로 인한 합병 평가차익 중 일정한 금액에 한하여 과세 이연을 허용하고 있음.
- 즉, 과세 특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당해 평가차익 상당액을 토지의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손금산입하게 함으로써 과세 이연을 허용하고 있음.

■ **개선방안**

-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합병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를 건축물이나 토지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시기로 과세이연하는 것이 적절함.
- 왜냐하면, 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은 토지나 건축물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증(評價增)에 대해서 과세를 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임.

##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 ■ 현행 제도

- 결손금이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손금(총비용)이 총익금(총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말하며, 정책적으로 5년만 이월하여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이월된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이라고 함.
- 위에서 언급한 과세 특례 기본요건 이외에 <표 3>의 추가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 법인이 피합병 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 등기일 현재 피합병 법인의 5년 이내 발생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 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합병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제도임(「법인세법」 제45조).

**<표 3> 이월결손금 승계 합병 추가요건**

- ① 피합병 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 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이 합병 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일 것
- ② 합병 법인이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 경리할 것. 다만,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평가 및 개선 방안

- 현행 「세법」은 합병 법인이 피합병 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개정된 「기업인수합병에 관한회계처리준칙」에 의하면 대부분의 합병이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으로 회계처리하는 「매수법」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세법」의 규정은 실효성이 없음.

- 또한, 추가요건 중 첫 번째 요건은 기업 규모가 상이한 합병에 대해서는 과세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러한 요건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과세특례를 충족하는 합병의 경우 피합병 법인의 지분은 합병 회사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피합병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그대로 합병 법인에 승계되도록 함.
- 이 경우 피합병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승계하도록 함.
- 즉, 과세특례 요건과 두 번째 추가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의 경우 피합병 법인의 지분을 합병 법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피합병 법인의 결손금을 그대로 합병 법인에게 승계되도록 하여야 함.
- 벤처기업 M&A 활성화 대책으로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한 대상기업 요건을 완화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3).

## 피합병 법인의 청산소득

### ■ 현행 제도

- 법인이 해산 등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기 반영되지 아니한 부분 또는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보유기간 중 증가된 경제가치 등 사내에 유보되었던 소득이 환가 처분과정에서 배분 가능한 재산이 실현되므로 이러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제도로써 청산소득 과세 제도를 두고 있음.

-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청산 절차는 없으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고, 이 경우 청산소득은 합병 대가에서 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임.
- 다만, 기업 합병은 기업 자체의 경제적 기능인 경영 활동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합병 법인으로 이전되어 계속 유지되므로 피합병 법인의 사내유보이익을 모두 현실화하여 과세하지 않음.
- 즉, 합병시 당사 회사 간에 이해관계가 조정되어 자산의 평가익을 실현하지 않고 장부가액대로 승계하거나, 조세 특례를 인정하는 기본 요건 1,2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시가액이 액면가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 가급적 청산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 평가 및 개선 방안

- 현행 「세법」은 신주의 가액을 액면가로 계산하여 가급적 청산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과세 특례가 인정되는 합병인 경우 피합병 법인의 경제적 기능인 경영 활동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합병 법인으로 이전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피합병 법인의 청산소득을 과세할 필요가 없음.
- 피합병 회사의 청산소득에 관한 과세에 관한 것이므로 특례 요건 중 3번째 요건은 의미가 없으므로 특례 요건 1과 2만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 것은 타당함.
- 조세 특례 요건 중 기본 요건 1, 2를 충족하는 합병은 피합병 법인의 경제적 기능인 경영 활동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합병 법인으로 이전되어 계속 유지되므로,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산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의제배당소득

### ■ 현행 제도

- 의제배당이라 함은 형식상으로는 배당이 아니지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배당으로 보는 것을 말함.
- 현행 「세법」에서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 법인(소멸법인)의 주주가 합병 이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과 기타 자산의 합계액(합병 대가)이 피합병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 피합병 법인의 청산소득을 산정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합병시 당사 회사간에 이해관계가 조정되어 자산의 평가이익을 실현하지 않고 장부가액대로 승계하거나, 조세 특례를 인정하는 기본 요건 1, 2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시가가 액면가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 의제 배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과세를 유보하고 있음.

### ■ 평가 및 개선 방안

- 피합병 법인(소멸법인)의 주주가 합병 이후 합병 법인(존속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과 기타 자산의 합계액(합병 대가)이 피합병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소멸이익의 성격이 있음.
- 그런데, 법인이 합병됨에 따라 피합병 법인의 주식이 소멸되는 것은 배당도 아니고 양도도 아닌 합병 법인의 주식으로 형태만 변경된 주식의 계속 보유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합병 대가로 주식 이외의 합병 대가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주식의 취득가격에 가산하여 합병 이후 실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때로 과세시기를 이연하는 것이 타당함.
- 그리고, 이러한 의제 배당은 주식가치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세(capital gain)의 성격이 있으므로 주식을 처분할 시 자본이득세인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 ■ 현행 제도

- 현행 「지방세법」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과세 물건이 합병 후에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공장 신·증설 등에 해당되어 중과세되는 재산의 경우에는 과세함(「지방세법」 제100조 제4호).

### ■ 평가 및 개선 방안

- 「법인세법」상 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인 경우에는 피합병 회사가 갖고 있던 소유권이 피합병 회사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합병 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식적인 취득이므로 과세 물건에 따라 중과세하는 것은 이론적 타당성이 없음.
- 「법인세법」상 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과세 물건인 경우에도 취득세를 과세하지 말아야 함.
-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정리하면 <표 4>와 같음.

<표 4> 기업 합병 관련 조세 제도 개선안

항 목	현행 제도	개선방안
합병 평가차익	·과세특례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병평가차익을 토지의 경우에는 압축기장총당금으로,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시상각총당금으로 설정하고 손금산입하게 하여 과세 이연 허용	·과세특례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조건없이 합병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함.
이월결손금	·과세특례 기본요건 이외의 추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 법인이 피합병 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함. ·추가요건은 ①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받은 주식의 합병 법인 주식 총수의 10% 이상일 것 ② 합병 법인이 자산, 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경리할 것임.	·과세특례 추가요건 중 첫 번째 요건을 폐지하여 과세 특례 기본요건과 추가요건 중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합병 법인이 피합병 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함.
피합병 법인의 청산소득	·과세특례 기본요건 중 첫 번째 및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가급적 청산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과세특례 기본요건 중 첫 번째 및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산소득을 과세하지 않음.
의제배당소득	·과세특례 기본요건 중 첫 번째 및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가급적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과세특례 기본요건 중 첫 번째 및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실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시기로 과세를 이연함. ·주식을 처분할 시 배당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과세함.
취득세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을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나, 별장, 골프장 등 종과세 물건에 대해서 비과세하지 않고 종과세함.	·과세특례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한 모든 취득세는 비과세함.



## ■ 합병 절차 간소화

- 이상에서는 기업 합병에 관한 조세상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하에서는 합병 절차상 장애 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합병 절차 개관

#### ■ 합병 계약서와 승인 결의

- 합병 당사 회사간에 합병 계약서를 작성하여 합병 조건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 정관의 내용 등을 정하고 각 합병 당사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합병 결의를 얻어야 함(「상법」 제522조, 제603조).
-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자를 정하여 2주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363조 제1항).
- 현행 「상법」상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는 주주총회를 전후하여 2단계로 규정되어 있음.
- 합병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에 이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522의 3).
- 또한, 현행 「상법」은 ‘합병 계약서를 주주총회 2주전에서 주주총회 이후 6개월 동안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522조의 2 제1항).

## ■ 채권자 보호절차

- 현행 「상법」에서는 ‘합병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527조의 5 제1항).

## ■ 흡수 합병의 보고총회 또는 신설 합병의 창립총회

- 채권자 보호절차 종료 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의 효력이 생긴 후 흡수 합병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신설 합병의 경우에는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함(「상법」 제526조, 제527조).

## ■ 합병 등기

- 흡수 합병의 경우 보고총회 종결일, 신설 합병의 경우 창립총회 종결일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 지점소재지 내에서는 3주 내 합병 등기를 하여야 함.
- 등기의 종류는 흡수 합병 법인은 변경등기, 피합병 법인은 해산등기, 신설 합병 법인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 합병의 효과는 합병 등기를 함으로써 발생함.
- 이하에서는 현행 「상법」상 최단 8개월 정도 소요되는 기업 합병 기간을 단축하고 합병 절차를 단순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함.

##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단축

- 첫째, 현행 「상법」에서는 ‘합병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527조의 5 제1항).
- 이러한 기간을 ‘합병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주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라고 이의 제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같은 채권자의 이의 제출 기간의 단축은 벤처기업의 M&A 활성화 대책으로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5조의 3 제1항).

## ■ 합병 결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 단축

-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자를 정하여 2주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363조 제1항).
- 이와 같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 2주 전을 1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임(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5조의 3 제2항 참조).

## ■ 합병 계약서 공시기간 단축

- 현행 「상법」은 ‘합병계약서를 주주총회 2주전에서 주주총회 이후 6개월 동안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522조의 2 제1항).

- 합병 절차를 단축하기 위하여 합병 계약서 공시 기간을 주주총회 1주전에서 주주총회 이후 2개월 동안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임(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5조의 3 제3항).

#### ■ 주식매수청구권 절차 간소화

- 현행 「상법」상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는 주주총회를 전후하여 2단계로 규정되어 있음.
-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합병에 관하여 결의가 있는 때에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기의 소유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
- 합병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에 이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522의 3).
- 이와 같이 2단계로 되어 있는 주식매수청구 절차를 다음과 같이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 것임.
- 합병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함(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3 제4항).

&lt;표 5&gt; 기업 합병 절차 관련 개선 방안

항 목	내 용
합병에 관한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단축	·합병에 관한 채권자의 이의 제출에 관한 공고를 합병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해야 되는 것을 1주 내에 하도록 단축함. ·합병에 관한 채권자의 이의 제출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것을 10일 이상으로 단축함.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 단축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 2주 전을 1주 전으로 단축
합병 계약서 공시기간 단축	·합병 계약서를 주주총회 2주 전부터 주주총회 이후 6개월 동안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주주총회 1주 전에서 주주총회 이후 2개월 동안 본점에 비치하는 것으로 단축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 간소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를 주총 이후 2단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주총 이전으로 단일화

## ■ 요약 및 결론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 제한 폐지 효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별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합병을 원할 경우 합병에 대한 장애 요인이 없어야 함.
- 그러나, 현재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합병에 관한 장애 요인에 대한 논의는 없고, 겸업제한을 폐지하는 경우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상호 실적 인정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 있음.
- 그러나, 만약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시공실적을 상호 의제하여 인정하게 되면 이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 제한 폐지의 효과를 무력화시킬 것이고, 이는 건설산업 구조조정에도 역행하는 정책임.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호 실적을 의제하는 대신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합병을 용이하게 하여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합병을 유도하는 것이 겸업 제한 폐지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임.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 제한 폐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기업 합병과 관련한 세금 문제가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합병 절차도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음.
- 기업 합병에 관한 세금 문제는 「세법」을 개정할 사항이고, 합병 절차에 관한 사항은 「상법」을 개정할 사항임.
- 「상법」은 쉽게 개정되기 어려우므로 벤처기업과 같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합병에 관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합병을 원하는 기업이 합병 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에 제출하게 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이 계획을 인정하면 위에서 논의한 정책 수단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향후 국내 건설시장은 높은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심지어는 건설 시장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어 건설산업은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시점에 도달할 수도 있음. 이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체 간 합병 및 전문건설업체 간 합병에도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이의섭(연구위원·eslee@cerik.re.kr)